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예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344 발의연월일: 2021. 5. 24.

발 의 자:김예지·김선교·김용판

김희국 • 배현진 • 윤창현

이명수・지성호・최형두

추경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체육시설을 프로스포츠 구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·수익할 수 있게 되었지만 지난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로 인하여 관중 축소 및 무관중 경기와 리그 조기 종료 등으로 프로스포츠의 피해가 극심해지고 프로스포츠 구단의 수익 사업에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 뿐만 아니라 일반재산의 대부를 통한 수익사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대부를 가능하게 하고, 사용료 또는 납부 방법을 정할 수 있으며, 일반재산을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침체된 프로스포츠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를 통한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(안 제17조).

법률 제 호

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3항 중 "제21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도"를 "제21조제1항, 제27조제1항 및 제31조에도"로, "관리를 위탁할"을 "관리 위탁 또는 대부할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하는"을 "하거나 대부하는"으로, "제22조에도"를 "제22조와 제32조에도"로, "사용료와"를 "사용료 및 대부료와"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"하는"을 "하거나 대부하는"으로, "수익의"를 "수익과 대부의"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"그 관리를 위탁하는"을 "관리 위탁 또는 대부하는"으로, "제20조 및 제27조에도"를 "제20조, 제27조 및 제29조에도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프로스포츠의 육성) ①・	제17조(프로스포츠의 육성) ①・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체육시	③
설의 효율적 활용과 프로스포	
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	
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공	
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<u>제21</u>	<u>제21</u>
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도	조제1항, 제27조제1항 및 제31
불구하고 공유재산을 25년 이	<u>조에도</u>
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목적	
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	
하는 범위에서 사용・수익을	
허가하거나 <u>관리를 위탁할</u> 수	<u>관리 위탁 또는</u>
있다.	대부할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	4
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・수	
익하게 <u>하는</u> 경우에는 「공유	<u>하거나 대부하는</u>
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<u>제22조</u>	
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	- <u>제22</u> 조와 제32조에도
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유재	
산의 <u>사용료와</u> 납부 방법 등을	사용료 및
정할 수 있다.	대부료와

- 1. ~ 5. (생략)
- ⑤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・수익하게 <u>하는</u> 경우에는 해당 공유재산의 목적 또는 용 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사용・<u>수익의</u> 내용 및 조건 을 부과하여야 한다.
-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 재산 중 체육시설(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 또는 개수・보 수된 시설을 포함한다)을 프로 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・수익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「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과 그에 딸린 부대시 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해당 프로스포 츠단(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 설하고 투자자가 해당 시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 로 제공하는 경우 민간 투자자 를 포함한다)과 우선하여 수의

1. ∼ 5. (현행과 같음)
⑤
하거나 대부하는-
<u>야기</u> 다 내구야는
<u>수익과 대부</u>
<u>의</u>
6
<u>관리 위탁</u>
<u>또는 대부하는</u>
<u>또는 대부하는</u>
<u>또는 대부하는</u> <u>제20조,</u>

계약할 수 있다. 건설 중인 경	
우에도 또한 같다.	,
⑦ ~ ⑨ (생 략)	⑦ ~ ⑨ (현행과 같음)